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
국가 지원 특례 신설〉

■ 최보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999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2
-----------------	---

I. 개요

1. 최보윤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999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최보윤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4. 21.
- (3) 회 부 일 : 2025. 4. 2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차별행위를 당한 자라고 하더라도 소송에서 차별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됨. 이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은 차별행위가 있어도 소송 제기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어 이 법의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이 법에 근거하여 제기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 부합하는 경우 국가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기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의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48조의2(소송비용의 특례) ① 국가는 이 법에 근거하여 제기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의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과 범위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 현행 「민사소송법」 제98조¹⁾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9조제1항²⁾에서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 대한 보수도 일정 범위 내 소송비용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일반 민사소송에서 비용 부담의 형평성과 남소 방지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원칙으로 기능해 왔으나,

공익소송(인권에 관한 소송, 소비자보호 소송, 고용관계 소송, 환경보호소송 등)이나 사회적 약자가 당사자인 사건의 경우에는 패소시 과도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커, 오히려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제약하는 구조적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³⁾⁴⁾

- 다만, 예외적으로 「민사소송법」 제99조 및 제100조⁵⁾에서는 법원이 재량으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부담을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익소송이 제기된 사정은 명시적인 예외 사유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

1)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2)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3) 법무·검찰개혁위원회(2020. 2. 10.), 『공익소송 패소비용의 필요적 감면 규정 마련』 권고. [보도자료].

4) 대한변호사협회(2022. 9. 16.). 국회와 정부는 공익소송에서 사회적 약자의 소송비용을 감면하는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하라. [성명서].

5) 「민사소송법」 제99조(원칙에 대한 예외)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0조(원칙에 대한 예외)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에는 법원은 지연됨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또한 국선변호사 제도와 함께 법원이 주도하는 대표적인 법률구조제도 중 하나인 민사상 소송구조 제도의 경우, 그 요건이 「민사소송법」 제128조)⁶⁾에 따라 ①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 ②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닐 것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익소송이나 사회적 약자인 당사자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 소송구조 결정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⁷⁾

□ 한편, 최근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장애인이 제기한 차별구제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제기된 헌법소원 관련,

헌법재판소는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 조항)는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본안 사건에서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과정에 적용되는 것이지, 소송비용의 부담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구체적 액수를 산정하는 당해사건의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위헌 결정이 있더라도 기존 소송비용 상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으며,

같은 법 제109조(변호사보수산입 조항)의 경우는 공익소송에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을 제한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로, 소송비용에 변호사 보수를 산입하는 것이 패소한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음.⁸⁾

6) 「민사소송법」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訴訟救助)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박미정, 이학구, 서용성, & 김성화. (2022). 소송구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22(19), 1-278.

□ 개정안은 장애인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과 범위 및 절차에 따라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권리 관련 소송의 위축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재판청구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특히,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 향상 및 인권 보장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우리 정부가 제출한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당사국인 한국의 소송 비용, 특히 변호사 보수 부담으로 인해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이 제한되는 점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상대방의 법률비용 부담을 면제하고, 추가적인 비용이나 행정적 장벽 없이 이용 가능한 정당한 상환제도를 보장할 것”이라고 우리 정부에 권고한 바 있음.⁹⁾

□ 다만,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정안은 “이 법에 근거하여 제기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그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8)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2헌바159 결정

9)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2022). 대한민국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국민에게 수익적 법률임을 고려하더라도, 불필요한 남소를 방지하고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소송의 공익성’, ‘소송 당사자의 경제적 취약성’ 등과 같은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예컨대, 지원 대상 소송의 범위를 “장애인차별의 구제 또는 권리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구체화하거나, 소송 당사자를 “경제적 취약계층”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둘째, 개정안에서는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를 대상으로 소송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소송은 패소 사례도 많지만,¹⁰⁾¹¹⁾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음.¹²⁾

그러나 조정이나 화해로 절차가 마무리될 때에는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¹³⁾ 개정안의 실질적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10) 홍석표. (2017). 법원에서의 장애인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공익소송. 사회보장법학, 6(1), 145-204.

11) 보건복지부를 통해 법원행정처에 문의한 결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송의 경우, 본안사건 접수 시 소송당사자의 장애 유무나 소 제기 근거 법령 등에 따라 사건을 별도로 분류·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현황 자료는 집계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12) 이준범. (2020). 장애인차별금지법 사건의 활성화와 편면적 소송비용 부담제도. 비교사법, 27(2), 315-348.

13) 「민사조정법」 제37조(절차비용) ① 조정절차의 비용은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민사소송법」 제106조(화해한 경우의 비용부담)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제231조의 경우를 포함한다)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

- 셋째, 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만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경우 일련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 소송의 비용 지원에 관한 것으로,

예산확보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4.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소송비용 지출 자력이 부족한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해 비용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하는 소송구조 제도*가 있음.

* 소송구조 제도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또한 이와 별개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한 소 제기 후 패소시 장애인측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고령자 등 다른 경제적·사회적 약자 지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남소의 우려도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을 요함.

문 의 처
02)6788-5509